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2024. 9. 11.(수)
제420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74

2024. 9. 11.(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경숙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8월 23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8월 26일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 9월 4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경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사료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한우 생산비가 증가되고, 한우 사육두수의 증가에 따른 경락가의 폭락으로 농가경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바 충북도내 한우 수급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충북 한우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의 개정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북한우 육성지원 종합계획 내 수급조절 관련 사항 명시 (안 제4조)

○ 종합계획에 따른 수급조절에 대한 한우농가의 협조 (안 제5조)

○ 관련 조례명의 오기 수정 및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안 제6조)

○ 조례상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안 제8조 및 제9조)

○ 충북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0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 **(필요성)** 본 조례는 한우 경락가의 폭락으로 한우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충북도 차원의 지속적인 한우 수급조절과 한우 판로 개선을 위한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타당성)** 본 조례에서는 한우 수급조절 관련 종합계획, 한우농가의 협조,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과 충북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외 제명의 개정과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사업추진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한우 수급조절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과 한우 브랜드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통해 한우 경락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 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며,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충북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에 한우 수급조절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키고, 충북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4

발의연월일 : 2024년 8월 23일
발 의 자 : 박경숙, 김꽃임, 이옥규, 유재목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사료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한우 생산비가 증가되고, 한우 사육두수의 증가에 따른 경락가의 폭락으로 농가경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바 충북도내 한우 수급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충북 한우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의 개정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북한우 육성지원 종합계획 내 수급조절 관련 사항 명시 (안 제4조)

○ 종합계획에 따른 수급조절에 대한 한우농가의 협조 (안 제5조)

○ 관련 조례명의 오기 수정 및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안 제6조)

○ 조례상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안 제8조 및 제9조)

○ 충북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0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4. 8.

○ 협 의 : 농정국 축수산과

○ 비 용 추 계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를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한우 수급조절 시책의 수행을 위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유통”을 “유통, 수급조절”로 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9. 충북한우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지원

제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한우개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충북한우 브랜드 육성) 도지사는 충북한우 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품질 차별화 방안, 품질 인증 및 포장재 지원
2. 브랜드 출하 장려 지원
3. 충북한우 브랜드 홍보강화를 위한 행사·축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충북한우 브랜드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충북한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받고 충청북도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 4. (현행과 같음) 5. ----------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충북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북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축산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한우 수급조절 시책의 수행을 위한 사항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주체별 역할) ①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도지사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주체별 역할) ① ----------유통, 수급조절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충북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충북한우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지원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②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한우개량) 도지사 및 한우농가·생산자단체는 한우개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한우개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한우개량

	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생산기반 조성) 도지사와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충북한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제9조(생산기반 조성)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0조의2(충북한우 브랜드 육성) 도지사는 충북한우 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품질 차별화 방안, 품질 인증 및 포장재 지원 2. 브랜드 출하 장려 지원 3. 충북한우 브랜드 홍보강화를 위한 행사·축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충북한우 브랜드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발췌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사업개요

○ 도내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와 도내 광역브랜드 홍보 및 한우수급 조절을 통한 한우산업 안정화 도모 및 육성

2. 비용 발생 요인

○ 한우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지원

○ 충북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관련 조문

○ 조례안 제6조(재정지원) * 수급조절 지원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한우개량)

○ 조례안 제10조의2(충북한우 브랜드 육성)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으로 함

○ 내 용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하여 산정함.

- 조례안 제6조, 제8조,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지원에 대한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기존) 한우 수급조절(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 1,000,000천원 × 5년 = 5,000,000천원

○ (기존) 한우경쟁력 강화사업(6종) : 944,000원 × 5년 = 4,720,000천원

- 혈통등록비, 거세시술비, 인공수정료, 선형심사, 우량암소 육성, 유전체 분석

○ (기존) 충북한우 브랜드 육성(장려금) : 128,000원 × 5년 = 64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농정국 축수산과장 최동수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2,072,000	2,072,000	2,072,000	2,072,000	2,072,000	10,360,000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6종)	944,000	944,000	944,000	944,000	944,000	4,720,000
브랜드 출하장려금	128,000	128,000	128,000	128,000	128,000	640,000
재원 조달	2,072,000	2,072,000	2,072,000	2,072,000	2,072,000	10,360,000
국 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도 비	411,600	411,600	411,600	411,600	411,600	2,058,000
시군비	960,400	960,400	960,400	960,400	960,400	4,802,000
기 타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